

[별표 7의2] <개정 2016. 12. 30.>

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 (제23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기 준
인 력	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어 것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- 환경(수질부문)·토목·위생·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-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- 청소종사자 3명 이상
시 설	-창고
장 비	-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: 1대 이상 -운반차량: 1대 이상 -고압세정기(18ℓ/min, 150kg/cm² 이상): 1대 이상 -배수펌프(1마력 이하, 5마력 이상): 각 1대 이상 -환기기구(200m³/hr): 1대 이상 -조명기구(DC 24V 이하): 1대 이상 -고무재질의 옷·안전모·안전벨트·로프: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-간이수질검사 기구(수소이온농도측정기·잔류염소측정기·색도계·탁도계): 각 1대 이상(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) -누전차단기: 1대 이상